##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74

발의연월일: 2024. 8. 13.

발 의 자 : 임호선 • 조 국 • 박지원

이연희 • 이학영 • 정준호

윤준병 • 주철현 • 이병진

박정현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총 12년 이내(최초 7년 이내+연장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및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등 농업인에게 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를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 한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이 짧을 경우 대규모 초기 시설 투자를 한 농 업인에게 큰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현재보다 긴 설치·운영 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 적이 있음.

이에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현재 최대 12년에서 '설치 시설의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기간 이내'로 사용기간을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 36조제1항).

법률 제 호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용한"을 "사용(제1호의 경우설치 시설의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기간 이내로 한다)한"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①농지를 다음 각 호	허가 등) 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			
정 기간 <u>사용한</u> 후 농지로 복	<u>사용(제1호의 경우 설</u>		
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치 시설의 허가 목적에 맞게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사용하는 기간 이내로 한다)한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			
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